탄소중립·녹색성장을 선도하는 '한국건설자원협회'

KORAS

협 회 일 보

제824호 2024.4.11.(목)

고용노동부,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특화국가 확대

◇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관련 특화국가 11개국으로 확대
◇ 해당 국가와 세부절차 등 조율 후 '24년도 하반기 부터 순차적 도입 예정

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'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(E-9) 활용 관련 설명회'('24.4.9)를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서비스업의 외국인 근로자 특화국가가 기존 3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, 세부 행정절차 조율 후 '24년도 하반기 외국인력 배정신청 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.

※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(E-9) 특화국가

기존(3개국)	적용예정(11개국)
○ 우즈베키스탄, 몽골, 중국	○ (기존) 우즈베키스탄, 몽골, 중국 ○ (확대) 네팔, 미얀마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필리핀

이는 그간 협회가 업계의 인력 수급문제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(아래 표 참조)한 결과 이뤄진 조치이며, 금번 특화국가 확대 조치까지 완료되면 현장 인력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※ 외국인 근로자(E-9) 관련 개선사항

협회 건의사항	제도개선 사항
○ 외국인근로자 쿼터 배정시기 조정	▸ 연 1회 배정에서 연 4회 배정으로 변경('18.1)
○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대상 업종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포함	▸ 대상 업종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포함('19.12)
○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	▸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* * '23년 : 2,830명, '24년 : 13,000명
○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확대	▸ 기존 3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('24년 하반기 반영 예정)

한편 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특화국가 확대 조치에 따른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